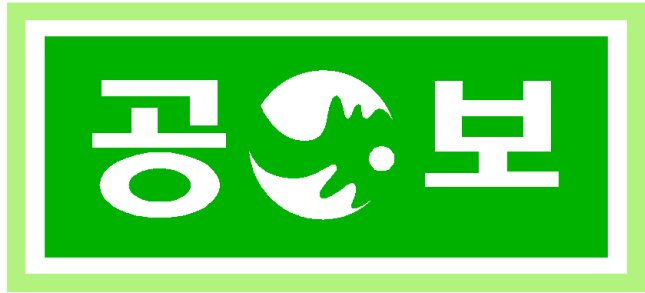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51 호 2013. 10. 28(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73호[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75호[하천점용허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76호[하천 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77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78호[도로명주소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7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94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공고]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9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73호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농수산과)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안동 1004-1						
점용위치	중산동 1178, 1178-10	하 천 명	약수천, 동천				
점용목적	- 용수로 D=600mm, L=41m - 관보호공 D=600mm, L=41m - 기존관로 준설 : V=3.6m ³	점용면적 (m ²)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42		
점용기간	○ 일 시	-					
하천공사의 명칭	○ 영 구	2013. 10. 21 ~ 영구					
	공작물 설치	하천공사 목 적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위치	중산동 1178, 1178-10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복	편입면적(m ²)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중산동	1178	천	12	-	국토교통부
북구	중산동	1178-10	제	30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75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KT울산사업지원센터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만구동 24-2번지						
점용위치	신명동 282-29	하 천 명	신명천				
점용목적	- 맨홀설치 L=2.9m, B=2m - 부스설치 L=2m, B=1m - 통신관 매설(3PVC) L=4m, B=0.62m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10	3		
점용기간	○ 일 시 착공일로부터 9일간						
	○ 영 구 2013. 8. 23. ~ 2018. 12. 31						
하천공사의 명칭	공작물 설치 및 굴착	하천공사 목적	통신시설구축공사(광통신부스등 설치)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공사위치	취용자와 동일 신명동 282-29	공사기간	당초 : 2013. 8 ~ 2013. 9 변경 : 2013. 10 ~ 2013. 11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신명동	282-29번지	천	13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76호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장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16-1(양정동)						
점용위치	양정동 776-33	하 천 명	양정천				
점용목적	안내간판 설치 1식 (L=3.4m, H=4.3m)	점용면적 (㎡)	구 분	인시	영구		
			지방하천		36		
점용기간	○ 일 시	-					
	○ 영 구	2013. 10. 23 ~ 영구					
하천공사의 명칭	공작물 설치	하천공사 목적	안내간판 설치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일간				
공사위치	양정동 776-33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양정동	776-33	천	36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3 - 17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관경)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고
		주소	성명					
'13.10.23.	2013-29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 연암동 엘지 진로아파트 106동 210	의용소방 대장 백진환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57번지 도로에 인접한 공유수면	132㎡	2013. 10. 1. ~ 2014. 3. 31.	등부소방서 의용소방대 간이사무실, 수난장비 보관소	조건부 허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7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고현로 194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6)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0.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26 1L	울산광역시 북구 고원로 194(진장동)	2013-10-28	고원백상진의공을기리기위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68 2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5길 3-1(명촌동)	2013-10-28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1-05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48-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44(매곡동)	2013-10-28	기존자연마을인매곡본동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86-3	울산광역시 북구 안기번들길 36(화봉동)	2013-10-28	이지역의옛지명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276, 277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2길 45(당사동)	2013-10-28	용바위가있는길에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지번추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7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87-7외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6)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0.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87-7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54-5	2013-10-28	건축물대장 말소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7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2B 8L	2013-10-28	건축물대장 말소	
3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39-1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73	2013-10-28	건축물대장 말소	
4	울산광역시 북구 등대3길 2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9-11	2013-10-28	건축물대장 말소	
5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74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352	2013-10-28	건축물대장 말소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3 - 894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지정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 10. 28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정금융기관 : NII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2. 금고범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 포함)
3. 약정기간 : 3년(2014. 1. 1 ~ 2016.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89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환경보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원칙 및 방향(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다. 구민의 협력, 사업자의 협력(안 제5조 내지 제6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내지 제12조)
- 마.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1. 13(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경제일자리과, 전화: 052-241-7701, FAX: 052-241-77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불 영 : 조례안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환경보전과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자재를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국민참여 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및 방향)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하여 에너지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 에너지 발굴 및 생산, 적극적인 이용 및 보급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활성화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구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협력) ①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정책 및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및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소외계층에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그 밖의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구의회 의원
 2. 에너지관련 기관장
 3.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⑦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선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3장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

제13조(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 구청장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교통대책 등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사업을 세대별, 건물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적정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에너지진단과 컨설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진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행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별, 공동주택 단지 등 주거지별, 상가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에너지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및 시책사업에의 참여를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절약 및 각종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

제2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